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7894(본소), 2011다77900(반소) 판결

[분배금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7. 2 선고 2014나873(본소), 2014나880(반소)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789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나22745(본소), 2010나22752(반소)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8가합8559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A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B

판결 선고 2013. 12. 12.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나22745(본소), 2010나22752(반소)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N

이유

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산 분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약정취지에 반하는 감정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감정의견이 명백히 신빙성이 없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가 그 감정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수소법원은 다른 합리성이 있는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거나 증거들을 종합하여 분쟁사안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942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01. 6.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C 사이에 대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그 위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이익금을 1/3씩 분배하기로 하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피고와 C은 건축 및 분양업무를 각 담당한 사실, 피고와 C이 원고에게 동업자금의 관리업무를 넘겨 줄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2002. 11. 25.경 피고와 C에게 동업자금 관리업무를 넘겨주면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1차 정산을 하여 투자원금과 이익금 등으로 각자 4,000만 원씩을 분배하고 동업자금 잔액 31,884,786원과 함께 원고가 작성하여 관리하던 거래 및 출납장부 등을 피고와 C에게 인계한 사실, 이 사건 인수인계 당시 1차와 2차 빌라는 분양이 완료되어 그 분양대금이 전부 입금되었으나 3차 빌라는 일부 분양되지 않거나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3차 빌라의 나머지 분양대금은 피고와 C이 수령하여 관리한 사실, 그 후 피고와 C은 원고를 상대로 1차 정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원고는 이 사건 인수인계 이후 피고와 C이 수령한 분양대금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서 원·피고와 C 사이에 동업재산 정산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사실, 이에 원·피고와 C은 세무사 L에게 이 사건 동업 장부에 대한 회계감정을 의뢰하여 그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각자의 정산금을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자금을 원고가 관리하다가 이 사건 인수인계 이후에는 피고와 C이 관리하여 온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피고와 C이 L에게 이 사건 동업 장부에 대한 회계감정을 의뢰하기로 약정한 취지는 이 사건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각자의 정산 분배금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동업약정

이후 인수인계 이전까지 원고가 동업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한 부분과 인수인계 이후 피고와 C이 동업자금을 관리한 부분을 포함하여 동업관계가 종료할 때까지의 동업기간 전체에 대한 회계감정을 통하여 정산 분배금을 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L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심에서 이 사건 동업 장부 등에 대한 회계감정을 하면서, 원고가 관리한 이 사건 인수인계 이전의 동업자금 부분에 대하여는 금전출납부 등 장부와 통장 입출금내역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여 감정하였으나, 이 사건 인수인계 이후 피고와 C이 관리한 부분은 장부와 영수증이 제시되었을 뿐 이를 확인할 금융자료가 없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감정하지 않는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의 취지와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 분배금을 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동업기간 전체에 대한 회계감정이 필요한데도 그 중 원고가 관리한 동업자금 부분에 대하여만 감정이 이루어져서 위 감정의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의견은 당사자의 약정취지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인수인계 이후 피고와 C은 3차 빌라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였는데, 위 감정의견에 따라 피고와 C이 동업자금을 관리한 부분을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분배금 정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L의 회계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산 분배금을 정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L의 위 감정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L의 감정의견에 명백히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 동업관계의 분배금 정산은 그 감정의견에 따라 확정하여야 하고, 그 분배금 정산은 금융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이 사건 인수인계 당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수인계 이전까지의 감정의견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분배금이 계산상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감정의견의 채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한편 L의 이 사건 인수인계 이전 부분에 대한 감정결과는 원고 작성의 금전출납부 등 장부에 기재된

수입·지출내역과 통장의 입출금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263,953,180원이 현금 잔액으로 남아있어야 하고 당시 동업자금을 관리하던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수입금을 수령한 것으로 장부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통장에는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내역이 없이 막바로 공사비 등으로 지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위 감정결과는 그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장부와 통장의 입출금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부분이 현금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평가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